2011.5.13(금) 16:00
제1차운영위원회

충청북도문화재단대표이사 및 이사선임과정규명
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검 토 보 고 서

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문화재단대표이사 및 이사선임과정규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검 토 보 고 서

□ 운영전문위원 조병옥입니다.

□ 2011년 5월 12일 발의·접수되고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「충청북도 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이사선임과정 규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김양희대표의원외 6인이 발의한 동 결의안의

○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

- 충청북도 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이사선임 과정에 정치성의 개입여부와
- 특정 정당편향, 예술·문화에 관한 전문성, 특정 정당개입 여부 등을
- 2011년 5월 23일부터 2011년 6월 22일까지 31일간
- 위원 7명이 조사 및 평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.

□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
○ 먼저, 특별위원회 설치는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에서는 여러개의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에 의한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설치토록 되어 있고

○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는

-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연서에 의한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「충청북도 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이사선임과정 규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」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볼 때

- 일반적인 특별위원회로 볼 경우「조사특별위원회」라는 명칭은 자칫 행정사무조사권의 발동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
-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볼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권 발의가 선행 의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직무소관과 활동 범위를 살펴보면

- 직무소관은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여러 상임위소관이 아니고 이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- 활동범위도 재단 대표이사 및 이사 21명에 대한 정치성 개입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
-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·청취,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사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
-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시급성과 당위성, 그리고 특별위원회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동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